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어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66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어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근거 마련	2
2.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7
3. 부칙	12
※ 참고자료	13
1.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조문	13
2.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개요	15

I. 제안경위

2026년 4월 21일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적응 지원 등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24조 등).

Ⅲ. 검토의견

1. 한국어교육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교육사업,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및 제2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생략)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략)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u>교육사업</u> <u><신설></u> 3. ~ 6. (생략)	----- ----- ----- ----- ·. 1. (현행과 같음) 2. ----- -----<u>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교육사업</u> <u>2의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u> 3. ~ 6.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제4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고용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제21조)¹⁾.

- 1)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국내 산업현장의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언어 및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해 근로계약의 내용, 노동관계 법령,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표] 외국인근로자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외국인근로자 수(명)	159,463	203,121	247,191	271,925	282,839

주: 고용허가제로 합법 근무 중인 외국인 중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인 근로자(매년 분기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 KOSIS 국가통계포털

이에 개정안은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적응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및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과 생활 적응을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령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²⁾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한 교육사업과 국내 생활 적응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³⁾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주거환경 개선,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26. 12. 10. 시행될 예정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현행법 제4조제2항 각 호는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규모 및 송출국가 지정 등 외국인력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은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기존 심의·의결사항의 내용과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한국어교육 등을 추가하고,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을 구체화하며, 외

2)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4)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6. 9.] [시행일: 2026. 12. 10.]

국인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적응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법령에 따라서도 가능한 사항⁵⁾으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으며, 교육사업 내용 구체화의 경우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5)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심의·의결 및 지원 등을 실시한 사례
- (심의·의결) 주거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 강화 등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의결(’22.12.28.), 외국인근로자 상담·교육체계 개편, 주거환경 개선 등 “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의결(’23.11.27.) 등
 - (한국어·산업안전교육) 입국 후 취업교육 16시간(한국의 직장문화 1H, 관계법령 5H, 고충상담절차 3H, 산업안전보건 5H, 기초기능 2H), 재직자 훈련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실시 중
 - (지역정착 지원사업) ’26년 총 58억원(국비-지방비 50:50), 전국 19개소 선정(거점형 13개소, 소지역형 6개소)
 - (공공주거시설 지원사업) 기숙사 2개소 건립(’25~’27년, 총 180억원(국비 54억원, 지방비 126억원)), 불법·노후 숙소 210개소 개보수(’26년, 총 42억원(국비 16.4억원, 지방비 16.4억원, 자부담 9.2억원))

2.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통역지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숙련 교육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

	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⁶⁾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개정안 제24조제6항과 관련하여 발의안의 개정문은 ‘지정, 지정 취소, 평가 및 지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령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제24조)⁷⁾, 시행령 등을 통해 지원사업의 내용, 지원요건, 평가 및 환류 등에 관해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⁸⁾⁹⁾

개정안은 한국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현행법령은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대상 및 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시설 지정의 형태

7)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참고 1] 제24조에 관한 시행령 및 고시 p.13. 참조

9) 현행법 제24조에 따라 공모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등 각종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지자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운영(국비와 지방비 5:5 매칭)되고 있으며, 수행기관의 고유 명칭과 별도로 사업운영상 “지역명+지원센터” 등의 형태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참고 2]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개요(고용노동부 자료) p.15 참조

로 운영하게 되면 사업의 탄력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 제26조¹⁰⁾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를 보고·조사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4조제1항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할 경우 연계된 조문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 제4조 및 제21조는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어교육과 함께 산업안전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24조제2항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업에도 이를 함께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하여서도 시행령을 통해 지원사업의 내용, 기관·단체의 요건, 평가·환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이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원대상을 명시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한정된 지원 근거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향후 다양한 기관·단체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포괄적

10)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규정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안 부칙 제2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를 개정안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시행 후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새로 지정을 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기존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신규 지정요건으로의 이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 사업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례 지원사업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및 국내 생활 지원사업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국가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면 매년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 실적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관련 상담, 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상담시설과 그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컴퓨터 교육 등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교육시설과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장변경을 위해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의 침식 제공을 위한 시설인 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 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쉼터시설과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비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려는 단체 등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5. 국가가 시설 또는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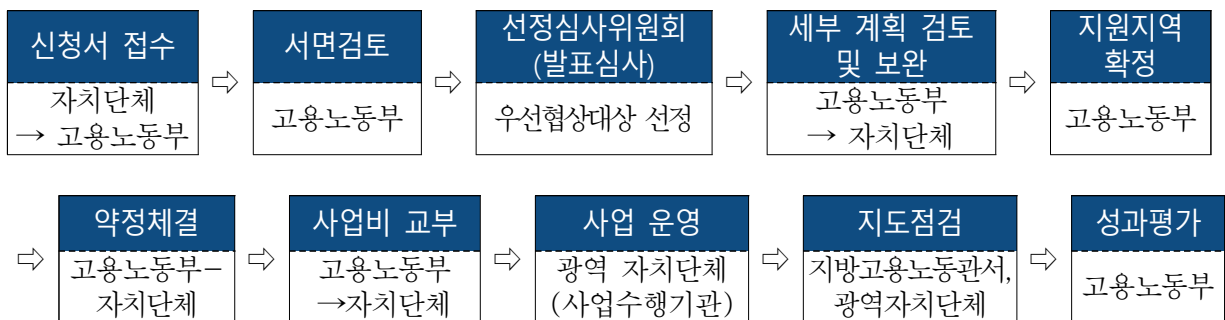
구분	시설	장비	
		종류	수량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의자, 책상, 전화기, 컴퓨터	직원 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사무용 기기
		기타 사무용 비품	직원 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사무용 비품
상담실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의자, 책상, 전화기, 상담일지 등	1명 이상을 상담할 수 있는 사무용 기기
교육장	훈련시설의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3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및 실습실은 훈련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의자, 책상, 컴퓨터, 흑판, 학습교재 등	훈련 직종 및 인원에 비례하는 적정한 사무용 기기 및 학습기자재
쉼터	1실당 6명 이하 수용 (수용인원 1명당 전용면적 5제곱미터 이상)	가전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각 1대 이상
		침구류	2인용 이상
		취사도구	1인용 이상
		식기도구	2인용 이상
		세면용품	2인용 이상

참고 2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지역 주요 인적자원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

< 사업 운영 체계 >



- (현황) '26년 총 사업 규모는 58억 원, 19개소(거점형 13개소, 소지역형 6개소) 선정

구분	선정 지역
거점형 (13개소)	부산, 대구, 인천, 전남광주, 충남, 전북,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경북(구미), 전남광주(여수), 경기(김포), 경기(화성)
소지역형 (6개소)	전남광주(영암), 경기(광주), 경남(진주), 울산, 청주, 강릉

* 노동부와 자치단체 50:50 매칭 대응투자로, 거점형은 4억 원(국비 2억 원), 소지역형은 1억 원(국비 0.5억 원) 지원

- (기능)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 제공

- (운영 방법) 전문 인력 상근, 주말 운영
- (상담 기능) 고충 상담, 법률 및 생활 밀접형 통합 상담 제공
- (교육 제공) 한국어 교육 및 안전 교육, 취업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지역 특화사업)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

□ 세부 선정 현황: 전체 19개소('26.7월 기준)

연번	유형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	명칭
1	거점형 (13개)	인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		대구	대구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광주	(사)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4		경남	(사)통도사 자비원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		경남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6		경남	(사)희망웅상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		충남	(사)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8		부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9		전북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0		경북(구미)	(사)아름다운 가정만들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11		광주전남(여수)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여수산학 협력본부	전남외국인근로자센터
12		경기(김포)	(사)노동자행복센터 봄날	경기도(김포)이주노동자지원센터
13		경기(화성)	(사)더큰이웃아시아	경기도이주노동자안전특화센터
14	소지역형 (6개)	전남광주(영암)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15		경기(광주)	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재단	광주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6		울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7		청주	청주상공회의소	청주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8		경남(진주)	(사)진주사랑의집	진주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9		강릉	(사)강릉자원봉사센터	강릉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